

[별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검토의견

기관명: 세이브더칠드런(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174)

담당부서: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 (제충만, 02-6900-4420)

1. 개괄

아동의 놀 권리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기본권리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권리를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공공 공간인 어린이 놀이터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더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세이브더칠드런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서 어린이 놀이터 등 의무 주민공동시설 설치 예외규정을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55조의 3(의무 주민공동시설 설치의 예외) 신설의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제55조의 3(의무 주민공동시설 설치의 예외) 신설의 문제

1) 아동 필수 시설인 놀이터 설치 축소 우려

국토교통부 장관의 2014. 7. 24.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주민공동시설 설치계획(배치도, 시설의 종류, 시설별 면적 등)을 포함하는 경우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등의 의무 주민공동시설 설치규정 적용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앞으로 사업주체는 주민운동시설, 도서실, 주민교육시설, 입주자집회소 등을 설치하여 “주민공동시설” 설치면적을 채우면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 위 개정안으로 인해 어린이 놀이터의 설치가 더욱 줄어들 것이 예상됩니다.

세이브더칠드런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2014. 6. 17. 발표한 ‘2013 한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에 의하면 아동들에게 놀이터는 단순한 공터가 아니라 동네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놀이터가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곳이라고 인식하는 아동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 지역에서는 아동이 놀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고려할 때 대규모 주택 단지 내에 어린이 놀이터를 짓지 않는 것이 허용된다면 행복추구권에서 비롯한 아동의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할 권리의 침해가 우려됩니다.

2) 헌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위반

아동은 헌법 제10조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의 주체입니다. 이에 더하여 헌법 제34조 제4항은 국가는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국가의 아동 인권 보장 의무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도 아동의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동의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할 권리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구체화된 권리이므로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 개정안은 어린이 놀이터 설치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위에서 확인한 아동의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할 권리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3)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복지법 제53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서 아동전용시설을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 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규정함으로써,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공동시설이 아니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4) 주택법의 취지에 반하는 개정안

주택법상 대규모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과 같은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은 사업계획승인권자에 의한 심의 대상이 됩니다. 즉 어린이, 노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복리시설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주택법의 취지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어린이놀이터 등과 같은 의무 주민공동시설을 전혀 설치하지 않고 주민운동시설, 입주자집회소 등 성인 주민을 위한 주민공동시설만을 설치하고서도 복리시설 설치요건



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것을 요구하는 주택법의 취지에 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모집공고에 위 설치계획을 포함한 경우에 한해 의무 주민공동시설 설치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입주자모집공고는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공고하는 것이므로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유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개정 이유에 따라 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입주자 수요라는 기준만으로 결정한다면 어린이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승인요건을 규정하고 이에 대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주택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은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3. 결론

개정안 제55조의3이 그대로 시행되어 어린이놀이터가 줄어들면 아동의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전용시설 설치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법에 반하며, 주택법 및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복리시설설치에 관한 사항을 사업계획승인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입법 취지에 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